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94호 2015. 4. 7.(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153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154호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0
- 사천시 조례 제1155호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사천시 조례 제1156호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사천시 조례 제1157호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사천시 조례 제1158호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8
- 사천시 조례 제1159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사천시 조례 제1160호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사천시 조례 제1161호 사천시 화장장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 ----- 35
- 사천시 조례 제1162호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사천시 조례 제1163호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42
- 사천시 조례 제1164호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사천시 조례 제1165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47
- 사천시 조례 제1166호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사천시 조례 제1167호 사천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57
- 사천시 조례 제1168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사천시 조례 제1169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 64
- 사천시 조례 제1170호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75
- 사천시 조례 제1171호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80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78호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 ----- 88
- 사천시 규칙 제579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 89
- 사천시 규칙 제580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 99
- 사천시 규칙 제581호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03
- 사천시 규칙 제582호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 109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5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 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7)

⑥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

사천시 조례 제115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로,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공동생활가정”을 “공동거주시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1)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 중 “공동생활가정” 을 각각 “공동거주시설” 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중 “독거노인” 을 각각 “홀로 사는 노인”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공동생활” 을 “공동거주”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동생활가정으로” 를 “공동거주시설로” 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노인생활가정” 을 “공동거주시설” 로 한다.

제12조 중 “공동생활가정시설의” 를 “공동거주시설의”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1, 2, 3, 4, 5,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3)

[별지 제1호의1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사업계획서

① 운영 목표

-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② 운영 방안

- 생활인을 위한 시설 및 친화 조직 내역, 차량 및 그 밖의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보조금 사용 방법 및 내역 등
- 보조금 사용 공개, 공동 경비 사용내역 공개 등

③ 보조금 사용계획

- 보조금 사용 내역 (세부적으로 작성)

④ 자부담 조달 방안

- 자부담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⑤ 안전 및 건강진료 등 서비스 관리계획

⑥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4)

[별지 제1호의2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비고
위원장						노인회장
간 사						이·통장
위 원						부녀회장
”						
”						
”						
”						

[별지 제1호의3 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5)

[별지 제1호의4서식]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명·인	비상 연락처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6)

[별지 제1호의5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자원봉사자 명부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사도움, 청소,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9)

[별지 제3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일지

결 재	간 사	운영위원장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이용자	명		
참 여 자	성 명								
	성 별								
활동사항									
식 단	조식(명) / 석식(명) / 숙박(명)								
지출내역									
특이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0)

[별지 제4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동향보고서

읍면동		일 시	
노인공동 생활가정명		운영위원장	연락처
주 소		간 사	연락처
제 목			
내 용	○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		
수신처		FAX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1)

사천시 조례 제11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을 “「행정규제기본법」” 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며,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 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2)

제3조제1항 중 “2인” 을 “2명” , “12인” 을 “12명” 으로 하고, 제2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를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5항 중 “1차에 한하여” 를 “한차례만”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부의사항” 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3)

제7조 중 “소속하에” 를 “소속으로” 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4)

사천시 조례 제11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중 “협의체” 를 “대표협
의체” 로 한다.

제2조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중 “내지” 를 “부터” 로 하고,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를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제2항, 제3항, 제7조, 제9조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 협의체에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

제8조제2항 중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 을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 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 중 “때를” 을 “경우를” 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 을 “운영과 사업”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6)

사천시 조례 제115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7)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 를 “한 차례” 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인” 을 각각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9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8)

사천시 조례 제115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센터”를 “육성재단”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29)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센터의 소재지)”를 “(재단의 소재지)”로 하고, 본문 중 “센터”를 “재단”으로 한다.

제5조 중 “센터는”을 “재단은”으로 하고 “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센터는”을 “재단은”으로,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를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7호, 제8호 중 “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를 “재단”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를 각각 “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2 중 제목 “(센터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센터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센터”를 “재단”으로 한다.

제11조 중 “센터”를 “재단”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관에 따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0)

제13조제1항 중 “센터는” 을 “재단은” 으로, “얻어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는” 을 “재단은”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중 “센터” 를 각각 “재단”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1)

[별표 1]

1. 사무국장 채용 자격요건

자 격 기 준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행정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라 함은 청소년(지도학)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을 말한다.

※ “실무”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2)

사천시 조례 제115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3)

사천시 조례 제116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사천시 청소년문화
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4)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등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와 제23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5)

사천시 조례 제116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천시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등의 부과방법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사천시 공설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6)

2. “관내”란 시체인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사천시인 경우를 말한다.
3. “관외”란 관내 이외의 주소지를 말한다.
4. “휴무”란 화장시설 가동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화장시설은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에 둔다.

제4조(관리인) 화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5조(업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장 업무
2. 그 밖의 화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자)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제6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는 사람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한 사람
3. 사천시 거주자중 만100세 이상의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시설 사용 신고 시에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휴무) 시장은 매년 명절(설·추석) 및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화장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8)

[별표]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단 위	사 용 료(천원)		비고
		사천시 관내 거주자	사천시 관외 거주자	
성인(15세 이상)	1구당	70	400	
소인(15세 미만)	1구당	50	300	
개장 유골	1구당	40	150	
태아	1구당	35	120	
기타 적출물	Kg당	1	3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39)

사천시 조례 제116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를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로 한다.

제4조 중 “자” 를 “사람”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0)

제5조 중 “수없다” 를 “수 없다” 로 하고, “15평방미터 범위안에서” 를 “15제곱미터 범위에서”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드시 사망자” 를 “사망자” 로 한다.

제9조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하고,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0조 중 “규정한” 을 “정한” 으로 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1)

[별표 1]

공설묘지사용료

(단위 : 원)

기 준	사 용 료	비 고
<u>3.3제곱미터당</u>	30,000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2)

사천시 조례 제11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3)

1.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지도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4)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④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5)

사천시 조례 제11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문화상조례” 를 “사천시 시민상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후손에게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사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6)

제2조제1항, 제2항, 중 “문화상” 을 “시민상”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 을 “명”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상” 을 “시민상” 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상심의회” 를 “시민상심의회” 로 한다.

제5조 조명 “문화상심사위원회” 를 “시민상심사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민상 수상 신청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2항 중 “인” 을 각각 “명” 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결정권을 갖는다.” 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 을 각각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 을 “시민상” 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7)

사천시 조례 제116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희망사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대표”란 「사천시 리·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리·통장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8)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마을
2. 마을총회에 따라 마을대표가 희망사천택시 운영을 신청한 마을

제4조(희망사천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사천택시 이용 대상은 희망사천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사천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 운행신청을 하는 경우에 운행한다.

③ 희망사천택시 탑승자는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희망사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망사천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49)

운영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월별로 지급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사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 또는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0)

[별표1]

희망사천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제4조제4항 관련)

운행구간	탑승자 부담요금
마을 ~ 읍면동 소재지	1,000원/대당

※ 해당 읍면동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인근 읍면동이 생활권인 경우는 인근 읍면동 소재지로도 운행 가능함.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2)

사천시 조례 제11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를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를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로, 제2조제2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3)

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신청에 의하여” 를 “신청으로” 로 하고, 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견인업무) 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

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4)

제5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법인용의” 를 “대행법인 등의”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6조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청구에 의하여” 를 “청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5)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견인료는 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보관요금

차량 입고 당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입고 다음 날부터는 50퍼센트 할인 적용하며, 최장 2개월까지만(180,000원) 부과 징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6)

[고지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필통지서			소요비용납부영수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주 소		납 부	주 소		납 부	주 소	
의무자	성 명		의무자	성 명		의무자	성 명	
견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인	일 시	
	장 소			장 소			장 소	
소요비용내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내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내역	견인료	보관료
	원	원		원	원		원	원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			납 부 장 소			납 부 장 소		
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 사천시시장 귀하			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자동차소유자(운전자)귀하		

(고지서식 후면)

1. 부과근거 법령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천시 주차장 조례」 제7조
2. 구제 방법
 -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
 - 소 제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 부터 90일 이내
 - ※ 「지방자치법」 제140조제5항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7)

사천시 조례 제11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 문화·관광·재난안전·도로·건설·도시 업무 관련 담당과장
3. 경찰서·교육청 및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5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 광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사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1)

사천시 조례 제11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50m이내로서 5호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인가”란 주택, 마을회관, 병원, 유치원 등 주민이 실거주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2)

5. 일부제한지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20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사육시설의 신·증축 후 일부제한지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3)

[별표2]

일부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제한지역(법정동 등)의 표시

- 동서동 : 실안동 전역
- 선구동 : 동림·좌룡동 전역
- 별용동 : 용강동 전역
- 향촌동 : 향촌동 전역
- 남양동 : 노룡·대포·송포·죽림동 전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돼지, 개, 닭, 오리 : **700m** 이내

※ 적용기준

- 가.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 하는 시설로 한다.
- 나.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 다.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4)

사천시 조례 제11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의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5)

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되는 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 요청자가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9.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공급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6)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및 지원 절차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약이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신청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66만원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되,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의 설치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출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의견을 요청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8)

④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세대별 평균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공사 준공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69)

부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75)

사천시 조례 제117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하여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상임 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 분석을 검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임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76)

③ 상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과 사무국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역 발전 및 항공산업에 대하여 관심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77)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엑스포 행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3. 엑스포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4. 엑스포에 관한 홍보활동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78)

2. 엑스포 행사 계획 승인

3. 그 밖에 엑스포와 관련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임원회의는 위원장, 상임 부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 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감사) ① 위원회의 회계기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둔다.

② 감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79)

③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엑스포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감사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0)

사천시 조례 제117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이하 “주민복지센터”라 한다)”란 시장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직접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1)

제3조(위치)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일 및 시간) 주민복지센터의 개장시간 및 운영일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용료) ①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을 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8조(위탁운영·관리) ① 시장은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2)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민복지센터가 소재한 지역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의 계약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3)

2.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은 주민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시장은 주민복지센터의 증·개축, 대수선 및 노후화 등으로 내구연한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4)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복지센터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5)

[별표 1]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치(제3조 관련)

지역명	명 칭	위 치	비 고
서포면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6	

[별표 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제5조 관련)

이 용 요 금 표		
구 분	금 액 (원)	비 고
아 동	2,000	7세 이하
노 인	3,000	70세 이상
일 반 인	4,000	
월 이 용 자	월50,000	일반인
	월30,000	일반인을 제외한 이용자 (아동, 노인)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7)

[별지 제2호서식]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수탁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설비	사용면적	m ²	사용층수	층
		m ²		m ²
	주요시설	m ²		m ²
	기타			
직원 (자원봉사자)	총인원	자격증 소지자	비고	
	총명 (남: , 여:)	총명 (남: , 여:)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서포면주민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8)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7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89)

사천시 규칙 제57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개 이상의 담당관·과·소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3조(규제영향분석)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1)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심사 요청)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부서장은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규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3)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존규제 정비)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시민 등이 기존규제 정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4)

[별지 제1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 -○호
의결연월일	20 . . . (제○○회)

심의
의결
사항

심사(안)

제출자	
제출연월일	20 . . .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5)

규 제 심 사 요 청 서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규제의 존속기한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⑨ 첨부자료	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6)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부서명 : ○ 작성자 :						
4. 근거법령등	○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 자	※ 인원수 기재						
6. 규제 존속기한							
7. 종전규제 및 신설(변 경)규제의 내용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7)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1-1. 규제신설의 배경 및 원인
-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2-1. 규제대안의 검토
-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3-1. 규제의 적정성
- 3-2. 이해관계자 협의
-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8)

[별지 제3호서식]

자 체 심 사 의 견 서

일시	20 . . .	담당부서(소관부서) :	담당자 :
심사안건명			
등록 규제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		신설/강화/내용심사	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련법령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X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			확인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비고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 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	
○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		·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99)

사천시 규칙 제58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0)

[별표 1]

사천시 읍·면의 이장 정수[제4조 관련]

읍면별	리명	정수	행정리
합계		232	
사천읍	소계	37	
	선인리	7	선인1리, 선인2리, 선인3리, 선인5리, 선인6리, 선인7리, 선인8리 일원
	정의리	4	정의1리, 정의2리, 정의3리 정의5리 일원
	평화리	3	평화1리, 평화2리, 평화3리 일원
	수석리	7	수석1리, 수석2리, 수석3리, 수석5리, 수석6리, 수석7리, 수석8리 일원
	사주리	2	사주1리, 사주2리 일원
	용당리	2	용당1리, 용당2리 일원
	구암리	4	구암1리, 구암2리, 구암3리, 구암5리 일원
	장전리	2	장전1리, 장전2리 일원
	금곡리	1	금곡리 일원
	두량리	5	두량1리, 두량2리, 두량3리, 두량5리, 두량6리 일원
	정동면	소계	30
고읍리		9	고읍, 동계1리, 동계2리, 동계3리, 동계5리, 동계6리, 동계7리, 동계8리, 동계9리 일원
예수리		3	예수, 반응, 염광 일원
화암리		2	화암, 여옥 일원
풍정리		5	풍정1리, 풍정2리, 풍정3리, 풍정5리, 풍정6리 일원
수청리		1	수청 일원
대곡리		1	대곡 일원
장산리		2	노천, 대산 일원
감곡리		2	복상, 감곡 일원
학촌리		2	만마, 학촌 일원
소곡리		3	소곡, 가곡, 객방 일원
사남면	소계	40	
	죽천리	3	죽천, 상죽, 용두 일원
	초전리	1	초전 일원
	방지리	1	방지 일원
	유천리	2	유천, 하동 일원
	월성리	17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월성8리, 월성9리, 월성10리, 월성11리, 월성12리, 월성13리, 월성14리, 곡성, 조동, 월성15리, 월성16리
	화전리	5	도동, 병둔, 화전, 예의, 구룡 일원
	우천리	3	우천, 능화, 연천 일원
	가천리	1	가천 일원
	종천리	2	종천, 소산 일원
	사촌리	3	사촌, 대산, 송암 일원
	계양리	2	계양, 진분계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1)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용 현 면	소 계	31	
	선진리	3	선진, 연호, 신기 일원
	통양리	1	통양 일원
	신촌리	2	신촌, 종포 일원
	신복리	7	신복, 평기, 신영, 동강1리, 동강2리, 동강3리, 동강5리 일원
	온정리	2	온정, 용정 일원
	석계리	1	석계 일원
	구월리	2	구월, 금구 일원
	용치리	1	용치 일원
	송지리	5	송지1리, 송지2리, 장송, 신송, 평송 일원
	금문리	1	금문 일원
	주문리	2	주문, 신평 일원
	덕곡리	4	덕곡1리, 덕곡2리, 덕곡, 부곡 일원
	축 동 면	소 계	17
길평리		0	
배춘리		5	신기, 양동, 배춘, 운계, 길평 일원
사다리		2	사다, 예동 일원
탑리		3	상탑, 중탑, 하탑 일원
반용리		3	신촌, 관동, 반룡 일원
가산리		3	용산, 용수, 가산 일원
구호리		1	구호 일원
곤 양 면	소 계	30	
	성내리	2	삼동, 수동 일원
	남문외리	2	옥곡, 남문 일원
	서정리	4	후전, 사동, 상정, 우터 일원
	무고리	2	무고, 상평 일원
	맥사리	1	맥사 일원
	송전리	3	송전, 포곡, 당천 일원
	대진리	4	석문, 한월, 제민, 어류 일원
	환덕리	3	본촌, 환덕, 고동포 일원
	목곡리	3	목단, 목실, 동천 일원
	홍사리	1	홍사 일원
	가화리	1	가화 일원
	검정리	1	검정 일원
중항리	3	와티, 안도, 점복개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2)

읍 면 별	리 명	정수	행 정 리
곤 명 면	소 계	25	
	추 천 리	3	오사, 추동, 신산 일원
	용 산 리	1	용산 일원
	조 장 리	1	조장 일원
	봉 계 리	2	원전, 오저 일원
	초 량 리	1	초량 일원
	삼 정 리	1	삼정 일원
	은 사 리	2	은사, 옥동 일원
	마 곡 리	1	마곡 일원
	송 립 리	1	송림 일원
	성 방 리	1	성방 일원
	작 팔 리	2	작팔, 구몰 일원
	신 흥 리	2	만지, 고월 일원
	정 곡 리	2	완사, 신기 일원
	본 촌 리	2	본촌, 양월 일원
	금 성 리	2	금성(구. 두인 포함), 장신 일원
	연 평 리	1	연평 일원
서 포 면	소 계	22	
	금 진 리	2	금진, 후포 일원
	내 구 리	3	내구, 굴포, 신흥 일원
	외 구 리	3	서구, 동구, 남구 일원
	조 도 리	1	조도 일원
	구 량 리	2	구량, 조교 일원
	자 혜 리	2	중촌, 구포 일원
	구 평 리	3	구평, 통정, 대포 일원
	선 전 리	3	선창, 염전, 아포 일원
	비 토 리	1	비토 일원
	다 평 리	2	다맥, 신소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3)

사천시 규칙 제58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사천시 시민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사천시 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하고, “와룡문화제 또는 시민체육대회 개막식 때”를 “시민의 날 행사 시에”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4)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상” 을 “시민상” 으로, “자와” 를 “사람과” 로, “자는” 은 “사람은”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문화상심사위원회” 를 “시민상심사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문화상심사위원회” 를 “시민상심사위원회”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상” 을 “시민상” 으로, “문화상심사부문별위원회” 를 “시민상심사부문별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 을 “명” 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상심사위원회” 를 “시민상심사위원회”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상심사위원회” 를 “시민상심사위원회” 로 하고, “인” 을 “명”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상심사위원회” 를 “시민상심사위원회” 로, “의거”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차” 를 “한 차례” 로,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를 “시민상심사위원회”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5)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주 소

성 명

추천부문

생년월일

주요 공적 사항

추천 사유

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사천시 시민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6)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등록기준지		규격사진 반명함판
주 소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연 락 처		
학 력		
졸업연월일	학 력 사 항	전공분야
주요경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상별 (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상 별 사 항	비 고
위 사항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성 명 : 인 </div>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7)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심의보고서

부 분	순 위	성 명	생년월일	추천사유	비 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장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8)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부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업적	비고
선 행				
문 예				
체 육				
지역개발				
지역경제				

위와 같이 심의 선정함.

년 월 일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394호(109)

사천시 규칙 제58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 다음과” 를 “뜻은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라 함은” 을 “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 을 “명”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담당주사” 를 “민원봉사담당주사”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